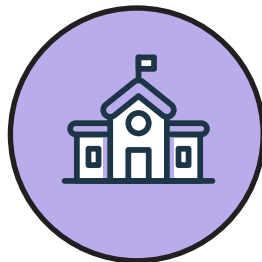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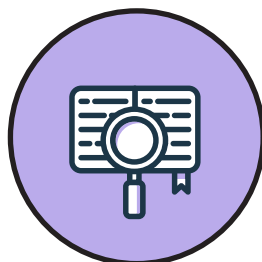
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?



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**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** 교육활동을 보호해주세요.



선생님이 **전문성을 발휘**하여, **교실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** 선생님을 **존중**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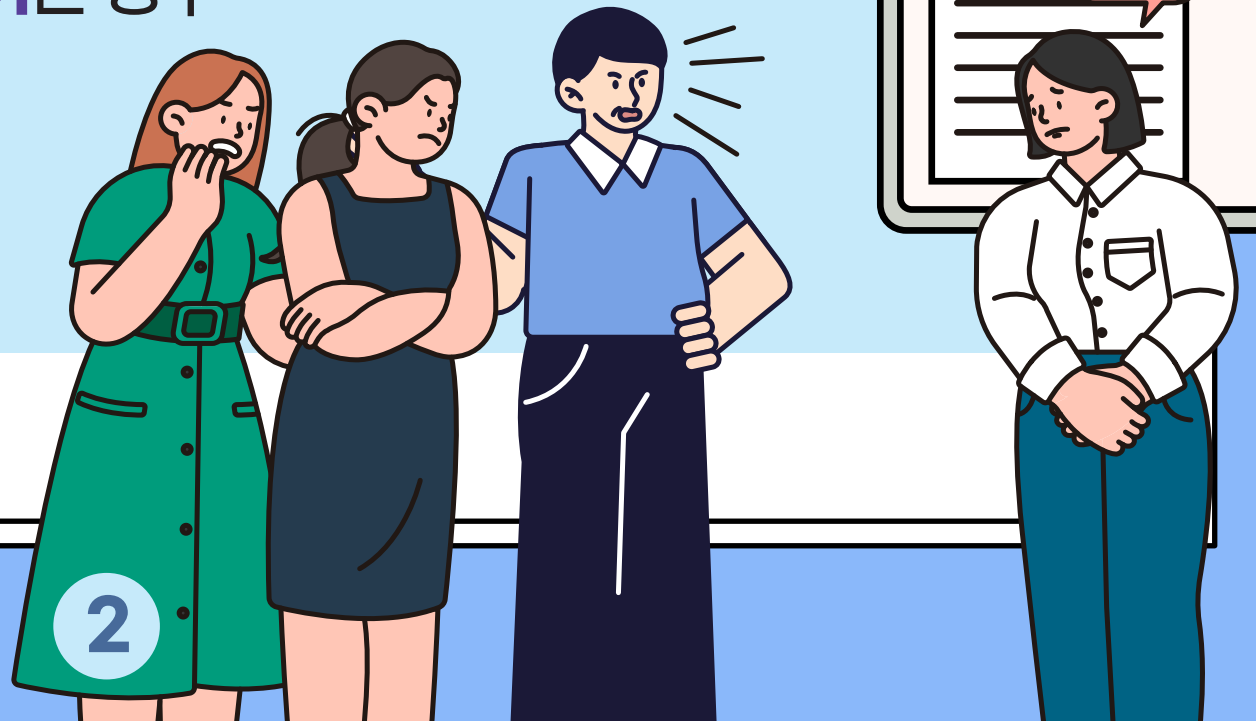


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**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**하는 일이자, **궁극적으로 '우리 아이'를 위한 일**입니다.

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

1 「형법」에 따른 공무방해에 관한 죄, 무고의 죄, 상해와 폭행의 죄, 협박의 죄, 명예에 관한 죄, 업무방해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

- ▶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고, 만류하는 교원을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
- ▶ 학부모가 '교원이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'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을 제기한 경우
- ▶ 교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 폭언을 하는 경우



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

- 2 「성폭력처벌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,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3 「정보통신망법」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
 - ▶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
-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,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
 - ▶ 담임교사의 주소를 알아낸 뒤 스토킹하는 경우



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



5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, 제한하는 행위

☑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

- ▶ 학부모가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

☑️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

- ▶ 아이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·항의하는 경우

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



6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- 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 - ▶ 교사의 반복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,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거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경우
- ☑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, 화상, 음성 등을 촬영, 녹화, 녹음,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
- ☑ 그 밖에 학교장이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3조 제항*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

*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,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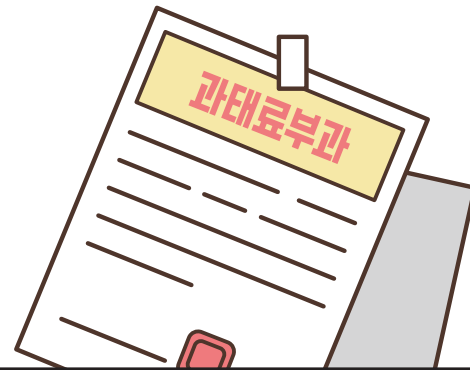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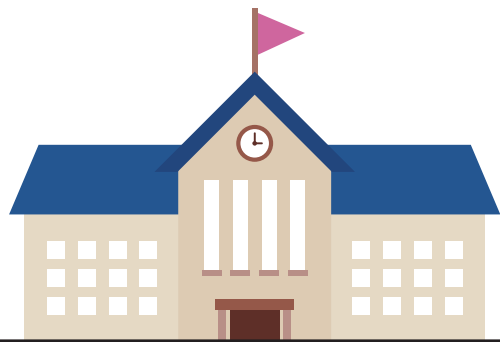
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은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!

- 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신고되면,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됩니다.
- ☑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,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
-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
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은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!



- ☑️ **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,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관할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**
- ☑️ **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,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**
 - ▶ ○○교육청, 교사 대상 3년간 20여건의 민원·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('24. 4. 18.)

선생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을까요?



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**상담은 언제든지 열려**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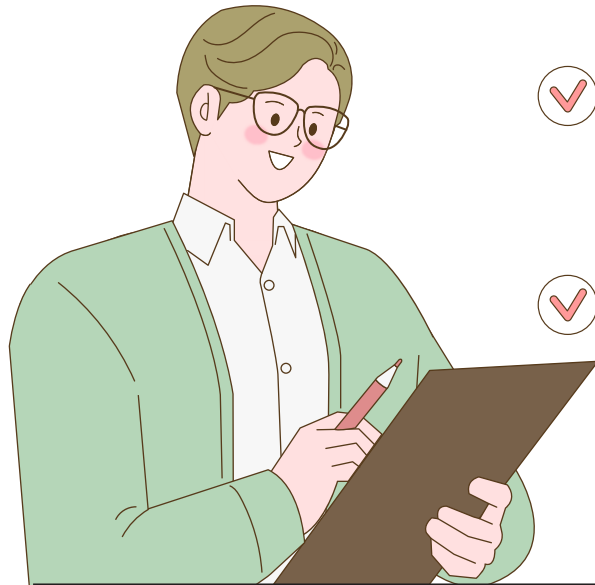
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상담을 요청**하시거나, **의견을 제안**하실 수 있습니다.

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.

- ▶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
- ▶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
- ▶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
- ▶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



그렇다면, 우리 아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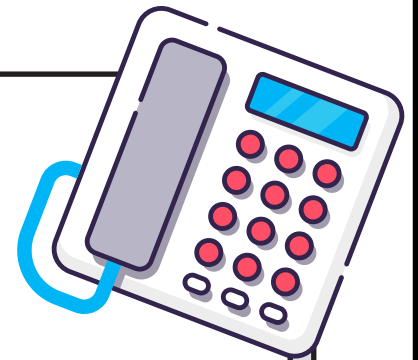
- ✓ 선생님과의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, **미리 '약속'을 잡아주세요.**
- ✓ 선생님이 사전에 **알려준 방법**으로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.
※ 상담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방법 1 학교 대표번호,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기

방법 2 안심번호 등을 통해 신청하기



상담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일시, 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세요.
선생님이 상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



**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아이들의
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
상호 존중·협력하는 학교 문화조성에 함께해주세요!**

고맙습니다.